

노동정책연구
2012. 제12권 제4호 pp.25-44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논문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참여율과 참여자 특성 변화*

김동헌**
박혁***

고용보험의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과 2006년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2002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과 2006년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연구의 주안점은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그 이전에 관찰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4년 이후에도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참여자 특성의 전반적인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목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핵심용어 :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율,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 특성

논문접수일: 2012년 8월 28일, 심사의뢰일: 2012년 9월 5일, 심사완료일: 2012년 11월 28일

* 고용보험 DB 자료를 제공해 준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 그리고 본 논문의 초고에 대해 매우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익명의 두 분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 이 논문은 한국 학술진흥재단 2007년도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327-2007-2-B00418)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 동국대학교 경영·관광대학 경제금융학과 교수(dhkim@dongguk.ac.kr)

*** 한국노동연구원 책임연구원(histephen@kli.re.kr)

I. 서론

고용보험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김동현·유길상, 2006).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조기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실업급여 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재취업보너스 프로그램을 두고 있다.

그런데 2003년의 자료를 이용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을 분석한 유길상(2007)의 연구에 의하면, 여성보다는 남성이, 40대 이상의 중·고령자에 비하여 30세 미만의 젊은 연령 계층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계층에 비하여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층이, 이직 전의 임금이 낮은 임금 계층보다는 고임금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용이한 자들이 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자임을 보여 주며, 목표 효율성(target efficiency)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 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김혜란 외, 2009; 유길상, 2007).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몇 차례의 변화를 경험하였는데, 제도 변화의 기본 방향은 수급자격의 완화와 수급수준의 증가로 특징지어진다. 특히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대폭적인 제도적 변화를 겪었고,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수 및 지급액이 크게 증가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는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고자 한다.¹⁾ 연구 주안점은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2003년에 관찰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분석하는 것이다. 제도 변화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집단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나 프로그램 진입효과(Meyer, 1995)로 인해, 다시 말하면 구직급여 및 조기재취업수당의 신청률이 증가함으로 인해 고학력,

1) 제Ⅲ장에서 프로그램 참여율과 참여자 집단의 정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다.

고임금 계층의 수급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수급자의 특성 변화는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²⁾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유길상(2007)의 논문에서 제기되었던 후속 연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본 논문은 Decker, O'Leary, and Woodbury(2001)가 제시한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의 규모를 각각 추정하고,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과 참여자의 특성 변화에 대한 풍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을 가진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우선 제Ⅱ장에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와 지급 추이를 간단히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 추이를 분석한다. 제Ⅳ장은 2004년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 이전과 이후 참여자의 특성을 비교 분석한다. 제Ⅴ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Ⅱ.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변화와 지급 추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 도입 당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제도로 출발하였다(김동헌·유길상, 2006; 김동헌·박혁, 2008, 김용성 외, 2009). 그 후 1998년 1월부터는 조기재취직수당 지급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인상하였으며, 2000년 4월 1일부터는 수급요건 중 '1년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의 요건을 '6월을 초과하여 계속 고용될 것이 확실한 안정된 직장에 취직한 경우'로 완화

2) 일반적으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급요건을 갖춘 실직자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단기간에 재취업이 가능하거나 구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이 낮기 때문에(상대적으로 고임금 근로자일 경우에 해당), 구직급여 수급으로 인한 편익보다 신청에 따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구직급여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이다. 2004년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널리 인식될 경우 구직급여 신청자와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자가 증가하게 되는 프로그램 진입효과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였다. 또한 2001년 7월 7일부터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조업, 건설업 또는 어업으로서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 조기재취직할 경우에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에서 전액으로 인상하였다.

2004년 1월 1일부터는 조기재취직수당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안정된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미지급일수 제한요건(미지급일수가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 이상)을 삭제함으로써 미지급일수에 무관하게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기기간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2006년 1월 1일부터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였다. 즉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2를 지급하고,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이상 3분의 2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을 지급하며, 소정급여일수를 3분의 1 미만을 남기고 재취업하는 경우에는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2006년 이후부터 2009년 말까지 별다른 제도상의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10년에 들어 또다시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된다(김동현·이승렬, 2011). 2010년 2월 8일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이며, 연령이 55세 이상인 자나 장애인인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의 금액은 구직급여일액에 미지급일수의 3분의 2를 곱한 금액이다. 또한 조기재취업수당의 청구는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003년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은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04년과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지

〈표 1〉 실업급여 종류별 지원 인원 추이

(단위 : 명,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체	416,041 (-2.8)	502,211 (20.7)	707,432 (40.9)	812,768 (14.9)	943,542 (16.1)	1,009,180 (7.0)	1,162,534 (15.2)
구직 급여	366,270 (-3.0)	444,061 (21.2)	619,420 (39.5)	706,645 (14.1)	816,692 (15.6)	855,749 (4.8)	981,985 (14.8)
상병 급여	5,872 (-3.4)	6,422 (9.4)	6,340 (-1.3)	5,801 (-8.5)	5,179 (-10.7)	5,307 (2.5)	5,436 (2.4)
조기 재취업	43,690 (-1.0)	51,537 (18.0)	81,419 (58.0)	99,925 (22.7)	121,232 (21.3)	147,688 (21.8)	174,403 (18.1)
기타	209 (6.1)	191 (-8.6)	253 (32.5)	397 (56.9)	439 (10.6)	436 (-0.7)	710 (62.8)

주: 실업급여 통계에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 안은 항목별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표 2〉 실업급여 종류별 지원 금액 추이

(단위: 백만 원, %)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전 체	839,315 (-0.7)	1,030,304 (22.8)	1,448,306 (40.6)	1,751,974 (21.0)	2,074,004 (18.4)	2,434,032 (17.4)	2,865,256 (17.7)
구직 급여	773,856 (-1.3)	945,599 (22.2)	1,327,384 (40.4)	1,602,875 (20.8)	1,834,039 (14.4)	2,117,168 (15.4)	2,466,521 (16.5)
상병 급여	4,371 (6.6)	4,824 (10.4)	6,025 (24.9)	5,839 (-3.1)	5,785 (-0.9)	6,326 (9.4)	6,867 (8.6)
조기 재취업	61,049 (6.9)	79,852 (30.8)	114,859 (43.8)	143,209 (24.7)	234,116 (63.5)	310,475 (32.6)	391,613 (26.1)
기타	40 (-7.0)	28 (-30.0)	38 (35.7)	51 (34.2)	65 (27.5)	64 (-1.3)	255 (298.4)

주: 실업급여 통계에는 일용근로자가 포함됨. () 안은 항목별 전년 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고용정보원(2008, 2009).

원 인원과 지원 금액이 급증하였다. 2004년에는 미지급일수 제한요건 삭제 등의 제도 개편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인원은 전년에 비해 58.0%, 지원 금액은 전년에 비해 43.8%나 급증하였다. 또한 2006년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

자가 재취업한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하는 제도 개편으로 인해 조기재취업수당 지원 금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63.5%나 급증하고, 지원 인원은 전년에 비해 21.3% 증가하게 된다.

2007년에 조기재취업수당은 147,688명에게 3,105억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21.8%, 32.6% 증가하였다. 2008년에는 174,403명에게 3,916억 원이 지원되어 전년 대비 각각 18.1%, 26.1%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둔화된 이유는 경기 침체로 인해 조기에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³⁾

Ⅲ. 프로그램 참여율 분석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에의 참여율은 자격자 비율, 수급자 비율, 그리고 신청자 비율이라는 3가지 지표로 측정할 수 있다(Decker, O'Leary, & Woodbury, 2001). 우선 자격자 비율은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수급자 비율은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가운데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의 비율이다. 신청자 비율은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중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한 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문헌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률(take-up rate)이라고 한다.

실제로 자격자 비율, 수급자 비율, 신청자 비율 간에는 단순한 관계가 존재한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확률은 '지급기준을 충족할 확률'에 '지급기준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실제 수급할 확률'을 곱하면 되기에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다음 식은 수급자 비율이 자격자 비율과 신청자 비율을 곱한 것임을 보여준다.

$$\frac{\text{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text{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 \frac{\text{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text{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times \frac{\text{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text{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3) 본 연구는 2008년 4월까지의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을 시도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2002년부터 2008년까지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추이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2002, 2004, 2006년의 각 연도별 전체 이직자 중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집단으로부터 출발하여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집단, 수급자 집단, 신청자 집단의 규모를 추정하고 그 추이를 살펴본다. 본 분석에서는 한국고용정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고용보험 DB 자료에는 고용보험제도가 시행된 이래 2008년 4월 30일까지의 피보험자와 실업급여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다.

참여율 분석 과정에서 특히 제도 변화에 따라 자격자 집단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2003년 이전의 지급기준은 ‘소정급여일수 2분의 1 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하는 경우(대기기간 내 재취업 불인정)’로 정하고 대상 집단을 파악하였다. 물론 해당 자격자 집단은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을 것 등 고용보험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적인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한편 2004년부터는 ‘잔여급여일수와 무관하게 소정급여일수 내에 재취업하는 경우(대기기간 내 재취업 인정)’로 정하고 대상 집단을 파악하였다. 자격자 집단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6개월 계속 고용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부분적 자격조건(partial qualification)하에서 자격자 집단을 추정하고 있다.

프로그램 참여율 변화의 추이는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이 표에 의하면 2002년의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비율은 20.1%이었지만, 2004년 1월 1일부터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2004년의 자격자 비율은 31.6%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자격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2002년 77.7%에서 2004년 60.2%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2004년의 신청자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자격자 비율 증가에 힘입어 2004년의 수급자 비율은 200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2년 대비 2004년의 자격자 비중이 11.5%포인트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신청자 비중은 오히려 17.5%포인트 감소한 이유는 고용보험 DB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자격자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고용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의 삭제로 인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한 자격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

당 신청이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04년의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비율은 31.6%이었지만, 2006년 1월 1일부터 재취업 시점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제도 변화로 인해 2006년의 자격자 비율은 33.8%로 소폭 증가하였다. 반면에 자격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2004년 60.2%에서 2006년 66.2%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2006년의 제도 변화로 인해 자격자 비율은 소폭의 증가를 보인 반면에, 신청률이 상당히 증가하여 조기재취업수당제도로의 진입효과가 주로 발생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는 재취업보너스 금액의 증가가 수급자격 확률을 높이기보다는 신청률을 높이기 때문에 수급자 비율이 증가하게 된다는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 결과(Robins & Spiegelman, 2001)와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요약하면, 2004년의 제도 변화는 조기재취업수당 역사상 가장 큰 변화를 초래하였고, 2006년의 제도 변화는 주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률을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율의 추이

(단위: 명, %)

연도별 이직자 집단 중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수(A)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수 (B)	자격자 수 (C)	자격자 비중 (C/A)	수급자 비중 (B/A)	신청자 비중 (B/C)	
2002년 추적집단	223,812	34,878	44,904	20.1	15.6	77.7
2004년 추적집단	381,187	72,446	120,300	31.6	19.0	60.2
2006년 추적집단	469,042	104,859	158,406	33.8	22.4	66.2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IV.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 분석

조기재취업수당은 2004년에 커다란 제도상의 변화를 겪었다. 따라서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2003년에 관찰되었던 조기재취업수당 참여자의 특성에 있어 어떤 체계적인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2002년과 2006년의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집단, 수급자 집단, 신청자 집단의 특성을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비교하고자 한다.⁴⁾ 로짓분석을 위해 우선 다음과 같이 새로운 더미 종속변수 3개를 생성한다. 구체적으로 자격자 특성 분석(분석모형 1)에서는 해당 연도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 종속변수, 수급자 특성 분석(분석모형 2)에서는 해당 연도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실제 수급하였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 종속변수, 신청자 특성 분석(분석모형 3)에서는 해당 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였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 종속변수이다.

1. 자격자 특성 분석

자격자 특성을 분석하는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를 사용하였다. 독립변수에는 인적 특성을 보여주는 성별, 연령, 학력 등의 변수, 이직 전 직장의 특성을 보여주는 직종, 산업, 사업장 규모 등의 변수, 그리고 구직급여 수급의 특성과 관련하여 구직급여일액(로그 취함), 이직 후 구직급여 신청에 소요된 기간, 소정급여일수 등의 변수를 포함시켰다. 독립변수들은 구직급여일액을 제외하고는 더미변수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표 4 참조).

4) 로짓분석에 앞서 2002년과 2006년의 분석대상자들의 인적 특성, 이전 직장 특성, 구직급여 특성별로 구분하여 통상적인 빈도분석을 실시하고 비교하였다. 빈도분석 결과를 원하는 독자는 저자에게 요청하기 바란다.

2002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계층이 조기 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실업기간에 미치는 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청년층 구직자와 같이 실업기간이 짧은 자일수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구직급여일액이 높을수록 구직탐색의 기회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실업기간이 길어진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이 높을수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한편 소정급여일수(수급기간)가 길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탐색 강도를 높이는 경향을 보일 것이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수급자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급여 신청에 소요된 기간별로는 1(2)주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에 비해 그 이후에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격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⁵⁾

200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2년의 경우에 비해 남성이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졌지만, 연령별 특성이나 학력별 특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2006년의 경우가 200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수급자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볼 때 소정급여일수가 180일 이상으로 비교적 소정급여일수가 긴 수급자 집단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2002년에 비해 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수급자 특성 분석

수급자 특성을 분석하는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 신규 구직급여

5) 2002년 자료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에 소요된 기간이 '1주 이내'인 수급자가 기준 집단이고, 2006년 자료의 경우 '2주 이내'인 수급자가 기준 집단이다.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실제 수급하였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⁶⁾ 독립변수는 앞의 자격자 특성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을 그대로 포함시켰다.

<표 5>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2년의 경우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격자 특성 분석에서 파악한 패턴과 동일한 결과이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감소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수급자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은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급여 신청에 소요된 기간별로는 1(2)주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수급자에 비해 그 이후에 신청한 수급자의 경우 수급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200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2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회귀계수 값에 있어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2002년에 관찰된 성별·연령별·학력별 수급 가능성의 일정한 패턴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2002년의 경우와는 달리 회귀계수 값이 더 이상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수급자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볼 때 소정급여일수가 더 많은 수급자 집단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은 2002년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3. 신청자 특성 분석

신청자 특성을 분석하는 로짓분석에서 종속변수는 해당 연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하는 자가 실제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였으면 1, 아니면 0인 더미변수이다. 독립변수는 자격자 특성 분석에서 사용되었던 변수들과 동일하다(표 6 참조).

<표 6>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02년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성에

6) 일용근로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은 황덕순·이지은(2008)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란다.

〈표 4〉 분석모형 1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격의 결정요인

	2002			2006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남자(여자)	0.689 ***	(0.014)	1.992	0.641 ***	(0.008)	1.898
30대(20대 이하)	-0.197 ***	(0.017)	0.821	-0.309 ***	(0.010)	0.735
40대	-0.345 ***	(0.020)	0.708	-0.400 ***	(0.011)	0.670
50대 이상	-0.806 ***	(0.026)	0.447	-0.820 ***	(0.013)	0.441
초중졸(고졸)	-0.726 ***	(0.033)	0.484	-0.741 ***	(0.020)	0.477
전문대, 대졸	0.378 ***	(0.014)	1.460	0.340 ***	(0.008)	1.405
대학원 이상	0.633 ***	(0.032)	1.883	0.612 ***	(0.023)	1.844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서비스판매직)	-0.051	(0.033)	0.950	0.011	(0.019)	1.011
전문가 및 기술자	0.202 ***	(0.027)	1.224	0.156 ***	(0.015)	1.168
사무직	-0.002	(0.025)	0.998	-0.094 ***	(0.013)	0.910
기능원 및 조직원	0.234 ***	(0.027)	1.263	0.113 ***	(0.014)	1.119
농어업 숙련근로자	0.882 ***	(0.057)	2.417	0.697 ***	(0.034)	2.007
단순노무직	0.247 ***	(0.028)	1.281	0.177 ***	(0.014)	1.194
농수림어업(서비스업)	-0.225 ***	(0.057)	0.799	0.137 ***	(0.032)	1.147
제조업	0.034 *	(0.015)	1.035	-0.051 ***	(0.009)	0.950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167	(0.120)	0.846	-0.056	(0.059)	0.946
건설업	0.137 ***	(0.022)	1.147	0.044 **	(0.014)	1.045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0.113 ***	(0.019)	0.893	-0.169 ***	(0.011)	0.844
운수, 통신업	0.148 ***	(0.027)	1.160	0.125 ***	(0.016)	1.133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업	0.074 **	(0.023)	1.077	0.019	(0.014)	1.019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0.019	(0.028)	1.019	0.058 ***	(0.014)	1.060
5인 미만(500인 이상)	0.359 ***	(0.023)	1.432	0.039 **	(0.013)	1.040
5~9인	0.296 ***	(0.030)	1.344	-0.021	(0.016)	0.979
10~29인	0.308 ***	(0.026)	1.361	0.059 ***	(0.014)	1.061
30~99인	0.274 ***	(0.027)	1.316	0.108 ***	(0.015)	1.114
100~299인	0.125 ***	(0.029)	1.133	0.128 ***	(0.015)	1.136
300~499인	0.094 *	(0.039)	1.098	0.158 ***	(0.022)	1.172
구직급여일액(로그)	-0.467 ***	(0.023)	0.627	-0.164 ***	(0.017)	0.849
1(2)주~1개월 이내(1<2>주 이내)	-0.222 ***	(0.018)	0.801	-0.331 ***	(0.007)	0.718
1~3개월 이내	-0.473 ***	(0.020)	0.623	-0.596 ***	(0.009)	0.551
3~6개월 이내	-0.784 ***	(0.031)	0.456	-0.920 ***	(0.019)	0.399
6개월 이상	-0.979 ***	(0.064)	0.376	-0.775 ***	(0.038)	0.461
120일(90일)	0.333 ***	(0.018)	1.395	0.381 ***	(0.010)	1.464
150일	0.603 ***	(0.019)	1.828	0.628 ***	(0.011)	1.874
180일	0.846 ***	(0.021)	2.330	0.929 ***	(0.012)	2.533
210일	0.741 ***	(0.033)	2.099	0.866 ***	(0.014)	2.377
240일	-	-	-	0.742 ***	(0.021)	2.099
상수	2.395 ***	(0.231)	10.964	0.520 **	(0.172)	1.682
-2LL	213,402.867			562,498.307		
분석사례 수	223,354명			467,618명		

주: *는 5%, **는 1% ***는 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표 5〉 분석모형 2 :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의 결정요인

	2002			2006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남자(여자)	0.630 ***	(0.016)	1.878	0.640 ***	(0.009)	1.897
30대(20대 이하)	-0.228 ***	(0.019)	0.796	-0.279 ***	(0.011)	0.756
40대	-0.373 ***	(0.022)	0.689	-0.419 ***	(0.013)	0.658
50대 이상	-0.754 ***	(0.028)	0.470	-0.927 ***	(0.015)	0.396
초중졸(고졸)	-0.861 ***	(0.040)	0.423	-0.888 ***	(0.027)	0.411
전문대, 대졸	0.491 ***	(0.015)	1.635	0.395 ***	(0.009)	1.484
대학원 이상	0.730 ***	(0.035)	2.075	0.651 ***	(0.025)	1.918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서비스판매직)	-0.008	(0.037)	0.992	0.089 ***	(0.022)	1.093
전문가 및 기술자	0.300 ***	(0.031)	1.350	0.163 ***	(0.017)	1.177
사무직	0.097 **	(0.029)	1.102	-0.013	(0.015)	0.987
기능원 및 조직원	0.285 ***	(0.031)	1.329	0.102 ***	(0.017)	1.108
농어업 숙련근로자	0.962 ***	(0.063)	2.616	0.203 ***	(0.043)	1.225
단순노무직	0.309 ***	(0.033)	1.362	0.111 ***	(0.017)	1.118
농수림어업(서비스업)	-0.277 ***	(0.064)	0.758	-0.295 ***	(0.043)	0.745
제조업	0.038 *	(0.017)	1.039	0.015	(0.011)	1.015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40	(0.137)	0.787	-0.048	(0.068)	0.953
건설업	0.098 ***	(0.024)	1.103	0.074 ***	(0.016)	1.077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0.182 ***	(0.021)	0.833	-0.144 ***	(0.013)	0.866
운수, 통신업	0.135 ***	(0.030)	1.144	0.055 **	(0.018)	1.057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업	0.097 ***	(0.025)	1.102	0.179 ***	(0.016)	1.196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0.016	(0.031)	0.984	-0.088 ***	(0.016)	0.915
5인 미만(500인 이상)	0.427 ***	(0.025)	1.533	0.157 ***	(0.015)	1.170
5~9인	0.354 ***	(0.033)	1.425	0.102 ***	(0.018)	1.107
10~29인	0.350 ***	(0.029)	1.419	0.129 ***	(0.016)	1.138
30~99인	0.330 ***	(0.030)	1.390	0.153 ***	(0.017)	1.165
100~299인	0.159 ***	(0.032)	1.173	0.107 ***	(0.018)	1.113
300~499인	0.023	(0.044)	1.023	0.045	(0.027)	1.046
구직급여일액(로그)	-0.319 ***	(0.026)	0.727	-0.006	(0.019)	0.994
1(2)주~1개월 이내(1<2>주 이내)	-0.275 ***	(0.020)	0.759	-0.336 ***	(0.008)	0.715
1~3개월 이내	-0.585 ***	(0.021)	0.557	-0.653 ***	(0.010)	0.520
3~6개월 이내	-1.009 ***	(0.037)	0.365	-1.035 ***	(0.024)	0.355
6개월 이상	-1.622 ***	(0.092)	0.197	-1.371 ***	(0.057)	0.254
120일(90일)	0.360 ***	(0.020)	1.434	0.564 ***	(0.012)	1.757
150일	0.637 ***	(0.021)	1.891	0.891 ***	(0.013)	2.437
180일	0.901 ***	(0.023)	2.462	1.262 ***	(0.014)	3.531
210일	0.824 ***	(0.036)	2.279	1.316 ***	(0.016)	3.728
240일	-	-	-	1.246 ***	(0.025)	3.475
상수	0.489	(0.256)	1.630	-2.051 ***	(0.194)	0.129
-2LL	183,021.642			457,761.320		
분석사례 수	223,354명			467,618명		

주: *는 5%, **는 1% ***는 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표 6〉 분석모형 3 :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의 결정요인

	2002			2006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회귀계수	표준오차	Exp(B)
남자(여자)	-0.078 *	(0.032)	0.925	0.167 ***	(0.014)	1.182
30대(20대 이하)	-0.146 ***	(0.038)	0.864	0.008	(0.017)	1.008
40대	-0.143 **	(0.043)	0.867	-0.124 ***	(0.019)	0.883
50대 이상	0.063	(0.056)	1.065	-0.422 ***	(0.023)	0.656
초중졸(고졸)	-0.524 ***	(0.066)	0.592	-0.456 ***	(0.038)	0.634
전문대, 대졸	0.492 ***	(0.029)	1.635	0.233 ***	(0.014)	1.263
대학원 이상	0.500 ***	(0.072)	1.648	0.257 ***	(0.038)	1.293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서비스판매직)	0.072	(0.070)	1.074	0.202 ***	(0.034)	1.224
전문가 및 기술자	0.339 ***	(0.055)	1.404	0.050 *	(0.025)	1.051
사무직	0.300 ***	(0.051)	1.350	0.153 ***	(0.023)	1.165
기능원 및 조직원	0.174 **	(0.054)	1.190	-0.010	(0.025)	0.990
농어업 숙련근로자	0.425 ***	(0.115)	1.529	-0.526 ***	(0.051)	0.591
단순노무직	0.184 **	(0.057)	1.201	-0.099 ***	(0.024)	0.906
농수림어업(서비스업)	-0.203	(0.114)	0.816	-0.658 ***	(0.050)	0.518
제조업	0.012	(0.034)	1.012	0.121 ***	(0.016)	1.129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0.259	(0.254)	0.772	-0.112	(0.102)	0.894
건설업	-0.149 **	(0.046)	0.861	0.064 **	(0.024)	1.066
도소매, 숙박 및 음식점업	-0.289 ***	(0.041)	0.749	-0.004	(0.020)	0.996
운수, 통신업	-0.013	(0.058)	0.987	-0.097 ***	(0.026)	0.907
금융보험 및 부동산임대업	0.102 *	(0.052)	1.107	0.377 ***	(0.026)	1.458
공공행정, 보건사회복지사업 등 기타	-0.183 **	(0.060)	0.833	-0.269 ***	(0.023)	0.764
5인 미만(500인 이상)	0.275 ***	(0.048)	1.317	0.196 ***	(0.023)	1.217
5~9인	0.207 **	(0.063)	1.231	0.171 ***	(0.027)	1.186
10~29인	0.157 **	(0.055)	1.170	0.081 **	(0.024)	1.084
30~99인	0.221 ***	(0.058)	1.248	0.077 **	(0.025)	1.080
100~299인	0.119	(0.061)	1.126	-0.029	(0.027)	0.972
300~499인	-0.232 **	(0.079)	0.793	-0.165 ***	(0.037)	0.848
구직급여일액(로그)	0.400 ***	(0.051)	1.491	0.330 ***	(0.030)	1.391
1(2)주~1개월 이내(1<2>주 이내)	-0.287 ***	(0.042)	0.751	-0.134 ***	(0.013)	0.875
1~3개월 이내	-0.552 ***	(0.044)	0.576	-0.332 ***	(0.015)	0.718
3~6개월 이내	-0.928 ***	(0.065)	0.395	-0.537 ***	(0.035)	0.585
6개월 이상	-1.853 ***	(0.125)	0.157	-1.407 ***	(0.070)	0.245
120일(90일)	0.181 ***	(0.039)	1.199	0.445 ***	(0.017)	1.560
150일	0.240 ***	(0.042)	1.271	0.690 ***	(0.018)	1.994
180일	0.358 ***	(0.045)	1.430	0.968 ***	(0.020)	2.633
210일	0.432 ***	(0.071)	1.541	1.201 ***	(0.025)	3.322
240일	-	-	-	1.215 ***	(0.038)	3.370
상수	-3.135 ***	(0.495)	0.044	-3.489 ***	(0.300)	0.031
-2LL	45,957.193			190,388.111		
분석사례 수	44,796명			157,770명		

주 : *는 5%, **는 1% ***는 0.1% 수준에서 유의함.

자료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DB 원자료」.

있어 남성이 여성에 비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신청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에 비해 전문대·대졸 학력자와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격자에 비해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 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구직급여 신청에 소요된 기간별로는 1(2)주 이내에 구직급여를 신청한 자격자에 비해 그 이후에 신청한 자격자의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낮게 나타났다.

2006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신청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30세 미만에 비해 특히 50대 이상의 신청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2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2006년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 패턴이 자격자, 수급자 특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구직급여일액 수준에 있어서는 2006년의 경우 2002년에 비해 구직급여일액이 증가할수록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소정급여일수가 90일인 자격자 집단을 기준 집단으로 볼 때 소정급여일수가 더 긴 자격자 집단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은 2002년에 비해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 자료를 이용하여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 조기재취업수당 프로그램 참여율의 변화와 참여자 집단의 특성 변화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2002년의 신규 구직급여 수급자 수 대비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비율은 20.1%이었지만, 2004년부터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의 삭제’ 등의 제도 변화로 인해 2004년의 자격자 비율은 31.6%로 급격하게 증가

하였다. 반면에 자격자 대비 신청자 비율은 2002년 77.7%에서 2004년 60.2% 수준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이렇게 신청자 비율은 감소하였지만 자격자 비율의 급증에 힘입어 2004년의 수급자 비율은 2002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2002년 대비 2004년의 자격자 비중이 11.5%포인트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신청자 비중은 오히려 17.5%포인트 감소한 이유는 고용보험 DB 자료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고 자격자 집단에 대한 설문조사, 고용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 등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미지급일수 제한 요건의 삭제로 인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를 얼마 남기지 않고 재취업에 성공한 자격자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지원 금액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수당 신청이 별다른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신청을 포기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유길상(2007)의 연구가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의 특성만 분석한 것에 반해, 본 연구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 자격자, 수급자, 신청자 집단을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에 대해 제도 변화 전후의 효과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우선 자격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실업기간에 미치는 변수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년층 구직자와 같이 실업기간이 짧은 자일수록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200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02년에 비해 남성이 지급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연령별 특성이나 학력별 특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수급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격자 집단의 특성 분석에서 파악한 패턴과 동일한 결과이다. 2006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2002년의 경우와 비교하여 회귀계수 값에 있어 약간의 변동을 보이고 있지만, 성별·연령별·학력별 수급 가능성의 일정한 패턴에 있어서는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기존의 연구(김혜란 외, 2009; 유길상 외, 2005; 유길상, 2007)에 의하면 취약 계층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고 있는 현상이 드러나 프

로그래ムの 목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의 조기재취업수당은 일본의 제도와 마찬가지로 일반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며, 장기실업자 등과 같은 특정한 목표 집단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2004년의 제도 변화 이후에도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되었던 결과와 유사하게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수급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수급자 특성의 전반적인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신청자 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면, 2002년의 경우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 비해 30대와 40대의 신청 가능성이 다소 낮게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고졸에 비해 전문대·대졸 및 대학원 이상 학력자의 신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06년의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의 분석 결과와는 대조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신청 가능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졌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 비해 특히 50대 이상의 신청 가능성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흥미롭게도 2002년의 경우와는 대조적으로 2006년에 있어서는 신청자의 인구학적 특성이 자격자, 수급자의 인구학적 특성과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즉 남성, 30세 미만, 고학력 자격자가 조기재취업수당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조기재취업수당의 효과에 대한 몇 편의 연구들이 발표되었다(김동현·이승렬, 2011). 이들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의 조기재취업수당제도는 비용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우리나라의 제도가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이나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고, 장기실업자 등 특정한 목표 집단이 아니라 모든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재취업보너스 실험에 실업자 프로파일링 모형이 결합될 경우 재취업보너스제도의 비용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고무적이다(O'Leary et al., 2005; Wandner, 2010). 이들 연구에 의하면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실업급여를 소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선택적으로 재취업보너스를 제외할 경우 비용 효과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재취업이 용이한 자들이 주로 조기재취업수당의 수혜자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목표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조기재취업수당의 제도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현행 제도의 효과성과 목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실업급여를 소진할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는 수급자에게 선택적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의 자료를 이용한 실업자 프로파일링 모형의 개발과 실업자 프로파일링을 통해 선택적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의할 경우의 비용 효과성에 관한 추가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동헌·박혁(2008). 「조기재취업수당제도 변화의 효과 분석」.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 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pp.129~184.
- 김동헌·유길상(2006). 「조기재취업수당제도의 설계에 관한 연구」. 『노동정책연구』 6(2): 205~225.
- 김동헌·이승렬(2011). 「한국의 재취업보너스제도 연구: 미국과 일본의 제도 비교로부터 얻는 시사점」. 『한국사회정책』 18(2): 9~32.
- 김용성 외(2009). 『2008년도 재정사업 심층평가 보고서: 조기재취업수당사업』. KDI 재정성과평가실.
- 김혜란·김은하·배은경·홍찬숙(2009). 『실업급여제도 예산의 젠더분석』.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유길상(2007). 「고용보험제도의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자 특성」. 『사회보장연구』 23(3): 1~24.
- 유길상·김복순·성재민(2003). 『실업급여 수급자의 특성과 재취업 행태』. 한국노동연구원.
- 유길상·김동헌·성재민·박혁(2005). 『조기재취업수당의 효율성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2008). 『고용보험통계연보 2007』. 한국고용정보원.
- _____ (2009). 『고용보험통계연보 2008』. 한국고용정보원.
- 황덕순 · 이지은(2008). 「일용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 실태 분석」. 『2008년 고용보험사업 심층평가 1부: 심층평가(실업급여)』. 노동부. pp.185~251.
- Decker, P. T., C. J. O'Leary, and S. A. Woodbury(2001).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Experiments." In P. K. Robins and R. G. Spiegelman. eds. *Reemployment Bonus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vidence from Three Field Experiments*. pp.77~103.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Meyer, B. D.(1995). "Lessons from the U.S. Unemployment Insurance Experiments."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33 (1): 91~131.
- O'Leary, C., P. T. Decker, and S. A. Wandner(2005). "Cost-Effectiveness of Targeted Reemployment Bonuses." *Journal of Human Resources* 40 (1): 270~279.
- Robins, P. K. and R. G. Spiegelman(2001). (eds.) *Reemployment Bonuses in the Unemployment Insurance System: Evidence from Three Field Experiments*. Kalamazoo, Michigan: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 Wandner, S. A.(2010). *Solving the Reemployment Puzzle: From Research to Policy*. W.E. Upjohn Institute for Employment Research.

A Study on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Dong-Heon Kim · Hyuck Park

There has been a great change of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in the employment insurance system since 2004.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changes of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nd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Specifically, using employment insurance DB data, we review the changes in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after the program changes in 2004 and 2006, and compare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2 with those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 in 2006. A main research topic is to analyze any systematic changes in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recipients observed in 2003 after the program change in 2004. Our analysis shows that, even after the program change, some patterns of male, younger and highly educated having a higher possibility of receiving reemployment bonus has been maintained, as reported by Yoo (2007) using the 2003 data. This is a main problem in the policy design from the perspective of target efficiency.

Keywords : reemployment bonus, participation in the reemployment bonus program, characteristics of reemployment bonus program participants